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메리츠증권㈜

2. 조치일 : 2026. 9. 9.

3. 조치내용

대상	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4건, 개선사항 3건
임 원	해당사항 없음
직 원 등	해당사항 없음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투자자보호를 고려한 KPI 설정 및 운영의 실효성 확보

증권사의 KPI 설정 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지표 없이 수익성 위주의 지표만을 설정하거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지표를 설정하더라도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유인이 부족하여 증권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전반적인 금융소비자보호가 약화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리츠증권은 KPI의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지표를 건전성 부문 내 민원건수 등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실제 평가점수 상 변별력이 부족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해 금융소비자보호 유인이 부족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메리츠증권은 KPI 설정시 투자자보호 관련 지표를 강화하여 전사적 관점에서의 투자자보호 유인을 제고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KPI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환전 관련 이상거래 모니터링 기준 정비

증권사는 외화증권 매매 및 권리행사에 따른 환전 및 외화송금 등의 외국환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여야 하고

메리츠증권은 환전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시행하면서 투자목적 이외 환차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환전제한 조치를 수행하고 있으나,

환율 등 해외투자 환경 변화에 따라 투자자별 환전·송금 패턴 등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이상거래를 적시에 차단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메리츠증권은 주기적으로 이상거래 모니터링 기준 등을 정비하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이상거래 차단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 외화예탁금 이용료율 산정의 적정성 재검토

증권사는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을 산정하여야 하고, 투자자예탁금과 무관한 비용을 예탁금 관련 비용으로 반영하여서는 아니 되나

메리츠증권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시 브랜드사용료 등 예탁금과 무관한 비용을 예탁금 관련 비용으로 산정하여 이용료율을 책정하고 있어 투자자에게 과도하게 비용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메리츠증권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시 직·간접비에 반영되는 항목을 점검하여 투자자예탁금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항목이 투자자예탁금 관련 비용에 반영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해외주식 계좌에 대한 과당매매 점검 프로세스 구축

증권사는 금융투자협회의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과당매매 의심 계좌를 확인하여 영업직원의 업무수행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하나

메리츠증권은 국내주식 계좌에 대하여 과당매매 여부를 확인하고 영업직원의 업무수행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해외주식에 대한 점검 프로세스가 부재하여 해외주식 거래에서 과당매매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메리츠증권은 해외주식 계좌에 대한 과당매매 점검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투자자보호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선사항

(1) 전산사고 등에 대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메리츠증권은 Super365계좌 이벤트 등으로 인하여 해외주식 거래량이 급증하여 이에 따른 전산사고 영향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25년 미국 주식 병합 산정오류, 현지브로커 이슈 등으로 인한 거래장애 등 전산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메리츠증권은 전산설비 확충 등과 더불어 전산사고에 대비한 업무연속성 계획, 장애대응매뉴얼 등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여 거래장애대응 및 투자자보호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2) 해외파생상품 자체 리스크관리 및 위험고지 강화

메리츠증권은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과손실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위험고지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고객리스크 등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급격한 가격변동 등 발생시 투자자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메리츠증권은 과손실계좌에 대해 모니터링 및 위험고지를 실시하는 등 자체 리스크관리 및 투자자보호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3) 명확하고 합리적인 협의수수료 기준 개선

메리츠증권은 협의수수료 및 환전수수료 우대와 관련하여 협의수수료 우대 적용대상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고객 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메리츠증권은 내규·지침 등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협의수수료 및 환전수수료 우대 혜택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